

2016년9월1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FINE)이 문을 엽니다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참고자료

보도

2016. 9. 2.(금) 조간

배포

2016. 8. 31.(수)

담당부서	상호여전감독국 금융혁신국	김태경 국장(3145-7550), 이상민 팀장(3145-7552) 이준호 선임국장(3145-8200), 서정보 팀장(3145-8210)
------	------------------	--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④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 예정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 (FINE)에도 게시할 방침임
- 이에 따라 네 번째 금융꿀팁으로,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 ④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직장인 A씨는 본인의 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설마 타인이 사용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가 바빠서 이를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였음. 그 사이 카드를 습득한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사용 하였음. A씨는 카드사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금액을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함 ● (사례2)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하여 분실 신고한 후 그 사이 발생한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받음 ● (사례3) 자신의 생년월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직장인 C씨는 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200만원의 현금서비스가 이용된 상태였으며 카드사는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함 ● (사례4) 전업주부 D씨는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을 위해 배우자 E씨에게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계속 소지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였고, 분실된 카드로 10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카드를 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절반만 보상받음

☞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을 기억하세요!

①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②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입니다.

③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꿀 팁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④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⑤ 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신용 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꿀 팁

⑥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 중인 카드(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카드사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현황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내	해외	
KB국민카드	1588-1688	82-2-6300-7300	www.kbcard.com
롯데카드	1588-8300	82-2-2280-2400	www.lottecard.co.kr
비씨카드	1588-4515	82-2-330-5701	www.bccard.com
삼성카드	1588-8900	82-2-2000-8100	www.samsungcard.com
신한카드	1544-7200	82-1544-7000	www.shinhancard.com
우리카드	1588-9955	82-2-2169-5001	www.wooricard.com
하나카드	1800-1111	82-2-3489-1000	www.hanacard.co.kr
현대카드	1577-6200	82-2-3015-9000	www.hyundaiocard.com
씨티카드	1566-0000	82-2-2004-1004	www.citicard.co.kr
NH농협카드	1644-4000	82-2-6942-6478	https://card.nonghyup.com

⑦ 분실.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 신고"과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 신고한 이후 분실된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도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여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부정사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⑧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SMS) 적극 활용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이용하면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⑨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 가능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꿀 팁

* 고의·과실 예시 : 회원의 고의로 인해 부정사용, 카드 뒷면 미서명,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지연,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 거부 등

⑩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금감원 분쟁조정사례([http://vod.fss.or.kr/vod/금융_분쟁조정사례집\(은행\).PDF](http://vod.fss.or.kr/vod/금융_분쟁조정사례집(은행).PDF))